

전향제도와 준법서약서에 관한 글

1. 반민주적 '전향제도' 없어야 한다, 서준식, 평화신문 제 2호 (1988, 7.31-8.6)
2. 전향, 무엇이 문제인가-영광과 오욕의 날카로운 대치점, 서준식
3. 준법서약서와 전향서-그 종이 한 장의 의미, 박원순

CPh.b.2

인권 자료실	1924
분류	비고
등록일	

1. 반민주적 '전향제도' 없어야 한다*

나는 법원에서 선고 받은 형기 7년을 다 복역하고도 사상전향거부들이 유로 보안감호처분을 받아 10년이라는 세월을 더 철창 속에서 보낸 후에야 출옥할 수 있었다. 이 석방은 첫째로 해외에서 17년이라는 실로 장구한 세월 동안 기적과도 같이 전개되어온 석방운동과, 둘째로 국내에서 급속히 강화되어온 민주역량이 확실히 성취해 나가는 민주화의 과정에서 만신창이의 악법인 사회안전법의 비인도성이 백일하에 드러나게 됨으로써 이루어진 것이다. 그리하여 나는 죽지 않고 성한 몸으로 바깥 세상에 나올 수 있었던 보안감호소 최초의 비전향 좌익사상범이 되었다. 이 사실에는 획기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 어떠한 비열한 수법을 써서라도 비전향자에게는 살아서 햇빛을 보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70년대 이래 군사정권의 한결같은 방침이었다. 이 방침은 실로 철저한 것이어서, 이를 위하여 그들은 전국에 수감된 비전향 좌익사상범들에게 사상전향을 강요하는 집중적이고도 조직적인 고문을 가

* 이 글은 서준석 씨가 『평화신문』 제2호(1988. 7. 31.~8. 6.)에 기고한 것을 재수록한 것이다.

했고, 그리고 그들 말대로 "전향을 거부하는 놈들은 늘어 죽도록 쇠창살 속에 매장시켜 버리는 법"인 사회안전법을 만들어내기도 했던 것이다. 그들은 오랫동안의 국제적인 망신을 무릅쓰면서까지 기어이 나를 전향시키려 했고, 나는 고문에 대해서는 자살미수라는 대가를, 사회안전법에 대해서는 10년 동안의 젊음이라는 대가를 치르면서까지 기어이 전향을 거부했다. 전향, 전향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전향이라는 말은 원래 우리말이 아니라 일본인들의 조어이다. 즉 전향이라는 개념은 만주사변을 거쳐 가속적으로 군국주의의 길로 치닫던 일본 제국주의가 우리의 독립운동을 포함한 반체제사상에 대하여 탄압을 히스테릭하게 강화시키던 과정에서 점차 형성되어 1933년 '사법당국통첩'으로 최종적으로 확립된 일본 제국주의의 발명품이다. 세계에서 거의 유례가 없는 일제시대의 광적인 사상탄압수단을 우리나라는 지금 아무런 의문도 없이 관행적으로 이어받아 애지중지 떠받들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현대 한국의 치안방법이 일제적 발상을 그대로 이어받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이며, 이런 류의 치안이란 단지 치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가장 근본적인 차원에서는 인간의 긍지나 존엄을 철저히 파괴하기 위한 것임을 우리는 인식해야 한다.

전향이란, 소극적으로는 자기가 간직하고 있는 일정한 생각이나 믿음을 포기하거나 실천하지 않겠다는 것을('반성문'이나 '각서'도 분명히 이 단계의 전향서 범주에 들어갈 것이다), 적극적으로는 자기가 간직하고 있던 생각이나 믿음은 잘못되고 사악한 것이었으며 앞으로는 체제에 충성을 다하겠다는 의사표시를 그 내용으로 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교도소에서 사상전향을 할 때는 이것을 문서로써 표명해야 하며, 안전기획부 요원 한 명과 교도소 간부들로 구성되는 '전향심사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인정을 받음으로써 전향이 확정된다. 소위 반국가사범들은 이 사상전향 여부를 기준으로 해서 분류되는데, 이 분류에는 세세한 치우 전반에 걸쳐서 이루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로 엄청난 차별대우가 뒤따르게 되어 있다. 그 밖에도 비전향자는 가석방이나 특사의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되므로, 무기수라면 30년이고 40년이고 한도 끝도 없이 복역해야 하고, 유기수라면 하루도 예누리 없는 형기

를 살아야 할 뿐 아니라 대개 형기가 만료되어도 사회안전법에 의해 보안 감호처분을 받게 되어 기약도 없이 계속 철창 속에서 살아야 한다. 그리고 앞에서 말한 70년대의 경우와 같이 비전향 사상범들은 전향을 강요하는 무시무시한 고문의 고통을 감수해야 한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수없이 많은 양심수들이 교도소에 들어갔다 나왔다. 그들은 대개 '서약서'(내지 '반성문')를 쓸 것을 요구받았을 터이지만, 그래도 그들 중 상당한 사람들이 '전향서'를 쓸 것을 요구받고 고민을 했다. 그래서 양심수들은 모두가 인간의 내심에까지 광적인 탄압의 손을 뻗치는 못된 일제의 잔재가 대한민국 교도소 안에 버젓이 살아 횡행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다. 그런데 분명히 지금까지도 지속되고 있는 우리의 살벌한 현대사의 시대적 제약 때문에 그들은 공공연하게 이 문제를 거론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분단시대의 광분하는 흑백논리 아래 '암묵적으로' 공인된 죄익수에 대한 가혹한 인권침해가 죄익수가 아닌 많은 양심수들의 숨통까지 조이게 되고, 그래서 많은 양심수들이 눈물을 삼키며 '전향서'를, '서약서'를, '반성문'을 써야 했다. 이제 이 내심에 대한 부당한 탄압에 대하여 모두 입을 열 때도 되지 않았을까?

나는 양심수들에게 사상전향을 요구하는 '제도'가 우리 민주주의의 현재와 미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깊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로 전향제도'는 비인간화의 체계이다. 나는 전향을 하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을 받을 때 다소 당혹스럽다. 질문자는 물론 "○○주의를 신봉하기 때문에" 혹은 "○○주의자가 아니기 때문에" 따위의 흑백식 대답을 예상해서 질문을 던지는 것이다. 그런 질문방식은 아무리 선의에서 나오는 것이라 하더라도 결국은 난폭한 분단논리인 것이다. 한 인간의 세계관, 민족관, 조국관, 인간관이란 것은 이런 분단상황에서 멋대로 빗어지고 형해화(形骸化)되어 버려 그 용어의 과학적 개념에 대한 최소한의 합의조차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주의'라는 몇 마디 말로써 규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사상전향제도'는 한 인간의 믿음이나 소망이나 느낌을 폭력적으로 흑백으로 분류해버리는 비인간성을 그 속성으로 가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나는 스스로를 깊이 들여다볼 때, 한 인간이 전향을 거부하는 이유란 것이 한두 가지로 이루어진 단순한 것일 수가 없다고 믿게 된다. 나는 물론 기본적으로는 나의 세계관과 민족관, 역사의 아름다운 미래에 대한 내 나름의 믿음을 고수하기 위하여 사상전향을 거부해왔다.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나의 전향거부에는 인간적으로 결박한 동기가 있다. 즉 1971년에 검거된 후 목숨이 아까워서 취조과정과 재판과정에서 내가 거뒀었던 나약하고 어리석은 행동들에 대한 뼈아픈 회한, 당시 대통령 선거에서 내가 박정희 당선을 위하여 허망하게 이용당해야 했던 괴로움(『평화신문』 4호 참조), 죽고 싶도록 참담했던 그 당시의 나의 심정으로서 내가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폐인이 되지 않기 위하여는 무슨 일이 있어도 폭력이나 압력에 대한 더 이상의 인간적 패배를 거뒀을 수가 없었던 것이다. 7년 형기가 끝나고 보안감호처분을 받은 이후로는 반사회안전법 투쟁이라는 커다란 전향 거부 동기가 생겼으며 나에게 주어진 고유의 투쟁영역을, 그것이 때로는 아무리 하찮게 느껴질지라도 차마 포기하고 떠날 수가 없었다.

나의 오기 많은 성격 등도 전향거부에 결코 무시 못할 이유로서 폄지 않을 수 없다. 나는 나에게 전향을 요구하는 자들로부터 치사하고 야수적인 방법으로 고통을 겪으면 겪을수록 그들이 억지로 바꾸어놓으려는 나의 사상의 정당성을 더욱더 확신할 수밖에 없었다.

이 밖에도 인간이라는 복잡한 동물은 각 개인의 처지에 따라 크고 작은 여러 가지 동기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인간인 것이다. 즉 전향 거부의 이유란 한 인간의 '인격 그 자체'인 것이다. 그러나 사상전향이라는 요식행위는 그 자체로서는 본질적으로 인간을 이 같은 모습으로서 대우해 주지 않는다. 그것은 인간을 무슨 주의나 아니냐, 복이나 남이나로 폭력적으로 환원시켜 버리는 살벌하고도 비인간적인, 그리고 인간다운 감수성을 무시하고 냉소하는 정치권력의 질문들인 것이다. 우리는 양심수들에게 던져지는 이같이 비인간적으로 경직된 질문들을 인간존엄의 이름으로 보다 인간화될 우리의 미래를 위하여 거부해야 한다.

둘째로 전향제도'는 인간의 긍지를 파괴하는 체계이다. 어떤 사람들은 말한다. "전향? 까짓것 종이 한 쪼가린데 써주면 어대세요?" 그러나 천만의

말씀이다. 전향의 문제는 종이 한 쪼가리의 문제는 절대로 아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왜 저 일제시대로부터 정치권력들은 그렇게도 많은 노력을 들이면서 그렇게도 끈질기게 양심수들로부터 전향서를 받아내려고 하겠는가. 그 목적은 일차적으로는 자기의 지배를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반체제인사들에게, 국가권력의 폭력 앞에서 인간이란 무력한 존재일 수밖에 없다는 패배주의를 심음으로써 그들을 정치적으로 폐인화시키는 데 있다. 제 아무리 '전술적으로' 전향서를 썼을 뿐이라고 떠벌려도 폭력에 굴복했다는 것을 마음속으로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것은 본인들이다. 나는 전향을 함으로써 결국은 정치 내지는 사회운동의 최전선으로부터 소극적인 생활로 물러선 사람들을 많이 목격해왔다. 그런 사람들 중에는 자신의 내부에 유지해왔던 사상범으로서의 긍지, 그로 인한 정신적 긴장 같은 것이 허물어지는 경우가 왕왕 있는데 그 상당수는 이런 경우에 정치적으로뿐 아니라 윤리적으로 타락하게 되고, 나아가서는 가끔 신체적으로도 폐인이 되어갈 수 있는 것이다. 전향강요가 한 인간을 무력화시켜 인간적인 것의 희망이나 인간능력에 대한 믿음을 분쇄함으로써 때로 한 사람의 인간성에 대한 그 얼마나 잔인한 파괴로 이어질 수 있는가를 우리는 인식해야 한다. 전향은 결코 '종이 한 쪼가리'의 문제일 수 없다.

셋째로 사상전향제도'는 이간(離間)의 체계이다. 분단과 그에 따르는 비민주의 지속을 바라는 정치권력은 그러한 분단과 비민주를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압도적 다수의 사람들을 크고 작은, 높고 낮은 모든 수준에서 이간시키려고 안간힘을 쓰게 마련이다. 인간사랑, 나라사랑의 지극히 인간다운 감수성은 바로 분단과 비민주에 항거하여 투쟁하는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인 입각점인데 정치권력은 언제나 이와 같은 입각점에 선 사람들 중 완강한 사람들을 철저히 고립시킴으로써 이들을 집중적인 폭력으로 산산조각 내버리려는 생리를 가지고 있기 마련이다. '감수성이 메마르고 냉혹하고 호전적'이라고 조작된 비전향의 이미지는 분단시대에 있어서는 양심수들 사이에서도 그렇지만 일반 대중들 사이에서는 더욱 위험스러운 이미지로 받아들여질 것이다. 옛날 감옥에서 알게 된 어떤 기독교인 양심수는 내가 감방에서 시를 읽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깜짝 놀랐다고 말했다. "전향도 거부하

는 '골수 공산당'이 아니냐. 그런데 최하림(崔夏林)의 시를 읽다니!"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는 그 기관지 『민중가족』의 창간사에서 우리 서로가 관심을 가지지 않도록, 이웃에 눈을 돌리지 않도록 끊임없이 외부압력에 의해 강요당하고 있다고 우리의 상황을 갈파하고 있다. 우리의 논리는 인간사랑과 나라사랑일 따름이다. 전향, 비전향은 우리를 이간시키려는 권력의 논리이다. 우리가 진정 거부해야 하는 것은 사상전향이라기보다 차라리 똑같이 인간사랑과 나라사랑에 입각하는 우리들을 전향과 비전향으로 분류, 이간시키려는 권력의 논리 그 자체인 것이다.

우리나라에는 가혹한 분단상황에서 지극히 자연스럽게 생겨나온 기묘한 상식들이 여러 가지가 있다. 그 중 하나가 전향서 쓰기를 거부하는 것은 극렬 공산당이나 하는 짓이라는 상식인데, 그 결과 소위 시국사범들은 때로 아무렇지도 않게 지극히 당연하다는 듯 전향서(내지 서약서)를 써버린다. 두 가지 의미에서 나는 이런 현상을 우려한다. 하나는, 그런 행위가 전향서를 쓰게 하는 인권침해행위 자체를 인정하고 들어가는 것이 되고, 그것을 하나의 관행으로써 확립시켜주는 작용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럼으로써 전향서 쓰기를 거부하는 사람은 고립되고 지속적인 박해 속에 남겨진다. 전향서(내지 서약서) 쓰기를 거부하는 양심수들의 석방은 뒤로 미루어지고 그들의 구금은 장기화된다.

"감옥에 가만히 앉아 있느니 전향서(내지 서약서)라도 써서 밖에 나가 활동을 해야 하지 않는가?" 그러나 정치권력이란 기본적으로 민중적 요구의 분출에 밀리어 양심수를 석방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지 양심수가 전향서(서약서)를 썼기 때문에 석방해주는 것은 아닐 것이다. 이것은 나의 석방의 예를 보아도 분명하다. '선별석방'을 비난하는 우리들은 이 전향(서약서)제도를 암묵적으로 받아들임으로써 우리 스스로가 '선별석방'을 위한 재료를 제공해주고 있는 측면을 반성해본 일이 있는 것일까? 만약에 모든 양심수가 일제히 이 전근대적인 양심탄압수단을 거부해 버린다면 이 이간장치는 무력해져 해체되어 버릴 것이다.

나는 또한 다음과 같은 점을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다. 70년 이후 군사정권하의 몸서 어려워진 상황은 우리에게 실리중심, 전술중심적인 사고와 행

동방식을 강요해왔음이 분명하다. 그리고 어느 의미에서는 그것을 어쩔 수 없었고 그 나름대로 긍정적으로 평가돼야 하는 면도 가지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전향제도라는 관행의 기능에 대한 깊은 사색도 올바른 인식도 없이, 거의 무원칙적으로 “중이 한 쪼가린데 좀 써주면 어때?” 하는 식의 지극히 실리적인 사고방식이 대량으로 퍼지도록 방치된다면 그 결과 지금은 직접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어떤 장기적이고 심층적인 차원에서 우리 사회의 미래에 미칠 문화적 영향은 어쩌면 헤아릴 수도 없이 심각한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나는 완전히 떨쳐버릴 수가 없다.

우리나라 헌법은 명문(明文)으로 양심의 자유권을 보장하고 있다. 이것은 인간정신의 자유에 관한 포괄적, 일반적 규정이며 그 구체적 발현인 종교, 학문, 표현의 자유에 대하여 원리적 지위에서는 절대적 자유권이다.

나는 이 글 앞부분에서 일제시대의 광적인 사상탄압수단을 우리가 ‘관행적으로’ 이어받고 있다는 표현을 사용했다. 왜 ‘관행적’인가? 그것은 이 사상 전향과 비전향과의 분류가 아무런 법적 근거없이 자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오랫동안 아무런 의문제기도 없이 이런 인권유린이 지극히 당연한 것처럼 행해져왔다는 사실에 나는 새삼 경악을 금할 수가 없다. 법에도 근거가 없는 이런 양심의 자유권에 대한 노골적인 침해행위는 전세계에도 유례를 찾아보기가 극히 어려운 것으로서, 우리는 이를 더 이상 존속시키지 말아야 할 것이다.

나는 최근 행형당국 쪽에서 이 끝사나운 일제 잔재인 “전향”이라는 용어를 적당한 다른 용어로 대체하기 위하여 애를 쓰고 있음을 알고 있다. 이를 생각할 때 나는 한편으로 부끄러움을, 다른 한편으로는 울분과 같은 것을 금할 수가 없다. 수없이 많은 양심수들이 교도소를 드나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알기로는 전향문제에 대한 본격적인 언급은 없었다. 그러나 명칭의 변화는 실체의 변화를 의미하지 않는다. 그럴 듯하게 옷만 갈아입은 전향 ‘제도’가 앞으로든 계속 양심수들의 양심의 자유권을 유린하는 일을 없애야 한다.

나는 사상전향문제 때문에 무시무시한 동요를 겪으면서 치절한 아픔의 세월을 보낸 인간이다. 그러나 아마도 나는 전향을 했어도 역시 자괴심과

자책 때문에 그만큼의 고통을 겪었을지도 모른다. 전향서를 쓰지 않는 것도 견디기 어려운 아픔이요, 전향서를 쓰는 것도 역시 견디기 힘든 아픔임에 틀림없다. 우리는 더 이상 이와 같은 아픔을 당해서는 안 된다.

전향요구는 인간의 가장 깊은 성역에 대한 국가권력의 폭력적 침입이며, 극에 달한 정치적 폭력의 한 표현이다.

특집 : 전향과 변절의 역사

전향, 무엇이 문제인가 — 영광과 오욕의 날카로운 대치점

인권 자료실		
등록일	번호	비고
	87-2	18

서준식
전국연합 인권위원장

전향은 단순히 '종이 한 장'의 문제가 아니다

옥중생활을 풍요롭게 바꾸어내지 못하는 빈곤한 삶의 방식, 옥중에는 그 나름의 험한 삶이 있다. 옥중에서는 불가능한 일을 갈망하기 때문에 세상이 그리워지는 것이다. 그들도 잠시만, 12년만 기다리면 전원석방의 날을 맞이할 수 있었는데... 다만 12년뿐이었는데!

전향이나 아니나의 문제는 사상에 대한 밀착력의 문제가 아니라 손톱 속에 삽입된 대나무 박편(薄片)을 견디어낼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였다. 그것은 육체의 문제, 특히 신경의 문제였다.

한 인간에게 무슨 주의나 아니나, '남'이나 '북' 이나의 대답을 강요하는 질문들은 인간다운 감수성을 싸그리 냉소하는 분명 파쇼의 폭력이었다.

그토록 오랜 동안 전향서 쓰기를 거부하기 위하여 나는 감옥에서 커다란 동요를 겪으면서 치절한 아픔의 세월을 보냈다. 그러나 내가 전향을 했어도 죄의식의 지옥불은 또한 그만큼의 아픔으로 나의 온몸을 지저뒀을 것이다. 그것은

그야말로 절대절명의 막다른 골목이었다.

전향서는 '종이 한 장'이었지만 전향문제는 틀림없이 '종이 한 장의 문제'가 아니었다. 그 '종이 한 장'은 나에게 뼈저린 무력감을 안겼을 것이고, 인간의 능력에 대한 믿음도 사회의 진보에 대한 희망도 빼앗아갔을 것이다. 또 나의 정신에서 젊음 그 자체를 빼앗아갔을 것이다. '종이 한 장'이 골목이 아니라고 우기는 것은 끝없는 나락으로 향하는 변절의 논리의 시작일 수가 있다.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변절자가 되고 싶지 않았다.

'종이 한 장'을 뚜렷이 항복이라고 자각했기에 나는 독방에서 지낸 오랜 세월도, 고문의 몽둥이도 견디어냈던 것이다. 1945년에 동경예방구금소에서와 그리고 조선총독부 보호교도소(保護教導所)에서 풀려나 활짝 열린 철문에서 당당히 걸어나왔을, 불과 40명에도 못미치는 공산주의자들이 나의 희망이자 지주였다. 나는 이렇게 20대와 30대 나이를 보냈다.

6월항쟁을 거쳐 완강했던 감옥에서 "비전향 출옥 제1호"의 꼬리표를 달고 나는 아무도 '전향'을 말하지 않는 기묘한 세상에 나왔다. 일제시기를 통하여 아마도 3만 명 가량은 치안유지법으로 검거되었을 것이고, 해방부터 전쟁까지 수십만 명의 '사상범'이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1989년에 생긴 보안관찰법 조사대상자가 5만 명이라고 하는 이 나라에서 '전향' 문제를 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단순히 감옥에서 장기수들이 전향을 거부하기 때문에 박해받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 단순히 전향 '제도'가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는 사실 그 자체조차 아무도 말하지 않고 있었던 것이다.

'비전향' 이기에 아무런 죄의식 없이 이 문제를 말할 수 있는 나는, 또한 '비전향' 이기에 이 문제를 말하는 일에 큰 괴로움을 느낀다. 전향 '제도'의 악랄성을 말해야 할 공개된 장소에서 우연히 '통혁당', '민청학련', '인혁당' 혹은 '남민전'과 눈이 마주칠 때 나의 등은 땀으로 젖고 나의 목소리는 기어든다. 이것은 참으로 잔인한 노릇이 아닌가!

괴롭기 때문에 작가 K씨는, 그리고 재야인사 C씨는 말한다. '전향' 같은 악독하고 못된 관행은 무시하고 살자고, 우리의 단결을 위하여 입을 다물자고. 전향 거부 따위는 남파간첩이나 하는 것이고 우리는 그런 굴레로부터 자유롭자고. 그러나 우리는 과연 전향논의를 비켜갈 수 있는가? 감옥에는 전향 '제도'의 굴레를 쓴 장기수들이 40년 동안이나 풀려나기를 기다리고 있다. 비전향 출옥자와 전향 출옥자와의 간극은 벌어지고, 갈등은 엄연하다. 전향은 악, 비전향은 선이라는 직선적인 이분법에 아무런 의문을 갖지 않은 젊은이들이 잇달아 감옥으로 들어가고 전향의 현실에 직면하고 있다. 아버지가 피해온 문제가 아

들을 괴롭히고 있는 것이다. 그래도 우리는 전향문제를 피해갈 수 있는가?

‘전향’이란 무엇인가

‘전향(轉向)’은 전향의 본 고장이자 전향 연구의 최선진국 일본에서 만들어진 개념이다. 그러기에 ‘전향’의 정확한 영역은 없다(씩 마땅치 않지만 renegade=배교자, 변절자가 있다고 한다. 이는 원래 이슬람교로 개종한 기독교 신자를 의미한다). 일본의 ‘사상의 과학연구회’는 전향 개념의 일반화를 시도하여 그것을 “권력의 강제로 말미암은 사상의 변화”라고 정의하였다.

전향은 “권력의 강제로 말미암”는다. 권력의 강제는 반드시 발가벗은 테러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정세 변화와 같은 권력이 만들어내는 여러가지 간접적인 강제까지도 포함시켜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그것은 1930년대 서유럽에서 스탈린주의가 등장하면서 다량으로 발생한 특히 지식인공산주의자들의 “양심에 따르는” 탈당 같은 현상을 포괄하지 않는다.

전향은 “사상의 변화”이기 때문에 그것은 일제하 공산주의자를 비롯하여 사회주의자, 자유주의자, 민족주의자, 종교인 등을 일단 모두 포괄하게 되나 일차적으로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공산주의 사상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이 전향이라는 말의 유래를 살펴보면 분명해진다.

‘전향’이라는 말이 사상적으로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나타난 것은 1922년 이후 일본 프롤레타리아운동의 ‘방향전환’ 논쟁 과정에서였다.

1922년 제1차 일본공산당 창당 무렵 야마가와(山川均)는 「무산계급운동의 방향전환」이라는 글에서, 대중과 유리 고립되어 있는 사회주의운동의 소수정예분자는 후방에 남겨진 대중 속으로 돌아가 대중이 당면하는 요구를 실현시키기 위하여 성실하게 노력해야 하며, 무산계급 대중을 움직이는 것을 배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야마가와의 ‘방향전환’론을 노동조합주의(=경제주의)와 혁명주의(=정치운동화)와의 절충주의라고 비판하면서 등장한 후쿠모토(福本和夫)라는 사람이 있다. ‘전향’이라는 말을 처음으로 사용한 사람은 그였다. 후쿠모토는 이제까지 처럼 대중 속에 엄병엄병 “침잠”함으로써 대중을 사회주의로 결합시키려는 운동 태도는 맑스적 원리와 상반되는 방식으로서, “결합하기 전에 우선 깨끗이 분리시켜야 한다”라는 레닌의 말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이다. 그는 말한다. “이제 이 ‘전향’을 할 때가 왔다!”라고.

후쿠모토의 ‘전향’은 끊임없이 상황에 추종하려는 좁은 경험주의를 넘어서 확고한 사고세계를 먼저 만들어, 그것을 딛고 자주적이고도 목적의식적으로 사회에 작용하게 될 것을 의미했다.

‘후쿠모토이즘’은 이 논쟁을 거쳐 일본 좌익의 지도이론이 되었다가 후에 그 관념적인 경향과 ‘실천적 분열주의’ 때문에 몰락하게 되지만, 여기서는 일본공산주의자들의 논쟁에는 별로 관심이 없다. 문제는 ‘전향’이다.

약삭 빠르고 머리 좋은 일본 사상검사들은 이 ‘전향’을 슬쩍하여 ‘변질’·‘굴복’·‘반성’ 따위의 어감이 좋지 않고 자존심 상하는 말 대신에 사용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마치 변절이 상황에 대한 주체적인 태도 변화인 양, 그리하여 정체모를 외국사상에 현혹되었던 자가 천황제의 정통사상으로 돌아오는 것을 ‘전향’이라고 부르기 시작하면서 ‘전향’ 개념은 확립되었다.

일본의 공식문서에서 ‘전향’은 1932년부터 나타난다. 이것은 명백한 사기극이었으나, 이 사기극은 1933년 일본공산당 최고간부였던 사노(佐野學), 나베야마(鍋山貞親)의 ‘전향’에 뒤이은 당원들의 대량전향이라는 대성과를 가져왔다.

이렇듯 ‘전향’은 본래 ‘전향’(공산주의로의 전향)에 대한 ‘재전향’을 의미하는 말로서 일차적으로는 공산주의자의 전향을 가리키는 말이어야 하며, 또한 공산주의(혹은 당)가 그 본질에서 비전향(계급적 적에 대한 비타협)이기 때문에 특히 공산주의자들의 전향이 문제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를 망각해버릴 때 이 ‘전향’이라는 말의 사상사적인 날카로움이 없어진다.

덧붙여 말하거니와 이 머리 좋은 일본 제국주의의 사법관료(사상검사)들은 전향과 관련하여 대규모 실증적 연구에 뒷받침된 체계적인 테크놀로지를 구축해놓았다. 그 결과 그들은 1930년대 중반 이후 급진주의 사상운동에 대하여 급진주의자들보다도 더 정확한 전망을 가질 수 있었으며, 이같은 상황은 이 지배체제가 붕괴될 때까지 끝내 역전되는 일이 없었다.

전향의 제도적 확립과 대량전향

1925년에 성립되고 1945년에 소멸하는 치안유지법의 역사는 결코 한 개의 바위와 같은 것이 아니었다. 시대의 추이에 따라 법은 변화하게 마련이지만 이 법의 경우 반체제사상의 억압을 위하여 그때그때 가능한 한 확대해석을 하다가 더이상 확대해석을 할 수 없는 한계점에서 법 개정의 필요를 호소했다. 따라서 수차례의 개정은 언제나 확대적용을 추진하는 것이었다.

제2차 공산당사건인 3·15사건(1928년)은 일본 사상범 탄압사상·보기드문 대규모 검거사건이었다. 이 사건의 결과 권력자는 치안유지법의 대개약 외에 특별고등경찰조직의 확대와 사상검찰 진용의 정비 확대라는 중요한 성과를 획득하게 된다. 이후 '국체변혁'을 목적으로 하는 결사(=일본공산당)를 찍어 이를 향해 가치없이 치안유지법을 적용해나가는 과정이 전개되는 것이다.

1929년부터 1932년까지 치안유지법은 설세없이 공산당 중앙 및 지방조직을 해체시킬 목적으로 발동되었고, 이른바 외곽단체를 향해서도 '국체변혁'을 목적으로 하는 공산당의 "목적 수행을 위한 행위를 하"는 결사라는 억지해석을 감행하면서 가치없이 발동되기에 이르렀다.

탄압의 외연이 넓어질수록 형사법규로서의 치안유지법의 성격은 모호해진다. 검거는 하되 반드시 형무소로 보내는 데까지는 치안유지법을 사용하지 않는 경향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기소처분을 유예 혹은 유보함으로써 본인의 '개전(改換)'(다름 아닌 전향이다)을 확보하는 방법이 나오게 된다. 이리하여 드디어 '전향'에의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전향보도(輔導)정책이 성립하고 실현되는 시기는 만주사변, 국제연맹 탈퇴 등의 곤란을 안고 있던 일본 제국주의가 비상사국적이고 반동혁신적인 '일본정신'을 필요로 할 무렵, 즉 파시즘으로 치닫기 시작할 무렵과 일치한다. 이후 치안유지법은 사상범 보호관찰제도(1936년), 예방구금제도(1941년)를 갖추면서 파국의 길을 향하게 되는 것이다.

전향을 시키는 데 반드시 고문이 가해진 것은 아니다. 특고경찰은 행정 집행 법상의 검속이나 위경죄(違警罪), 즉 결례의 유용에 의하여 보통 100일 정도, 길면 1년 가량 신병을 유치시켰는데, 이것은 사상범에게는 고문 못지 않게 고통스러웠다. 전향의 정도도 구금생활의 길고 짧음에 비례하여 구금생활이 길수록 그 전향상태가 높다고 했다.

1933년 6월 일본공산당 간부인 사노(佐野)와 나베야마(鍋山)는 코민테른의 방침을 거부하고, (만주사변의 긍정도 포함한) 민족주의와 천황제에 입각한 '일국사회주의' 건설을 주장하는 옥중전향 성명을 발표했다. 이 사건은 삼시간에 '전향 봄'을 불러일으켜 이후 약 1년 반 만에 옥중에 있던 공산주의자의 약 9할이 전향하는 사태가 벌어졌던 것이다.

공산주의자들의 이 어이없는 전향사태는 실은 후쿠모토가 제창한 '전향'에 대한 '재전향'인 셈이었다. '후쿠모토이즘'은 '이론인'의 형성을 목적으로 했다. 즉 순수하게 맑스주의적 요소를 추출하여 그것으로써 '온정'이나 '인자'와는 완전히 차원을 달리하는 '이론법칙'으로 무장을 하면 일본적 환경에 대하여

철벽을 칠 수 있다. 그 사상의 내용은 상황에 엄빙엄빙 어울리는 상황추종주의로부터의 절단, 초월주의, 일원법적 비판주의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상은 대체로 고립된 자족적 경향을 갖게 마련이며, 어떻게든 '자신의 힘'으로 역사를 개척해가려는 끈질김과 유연성을 결한다. 현실감각이 떨어져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외적인 현실사회에 대결하는 초월적 이론인을 현실세계로 끌어내리는 외적인 사건이 일어날 때 그의 내면상의 변화로서 전향은 일어나기가 쉽다. 만주사변에 돌입한 일본적 현실에서 '후쿠모토이즘'으로 무장했던 공산당원들이 연출한 희한한 무더기 전향의 정체는 이와 같은 것이었을 것이다.

거의 모든 '재전향'은 '전향'과의 관계에서 생각하지 않으면 안된다. 실로 "만절(晩節)을 보고 초심(初心)을 안다."

일본 공산주의운동은 1930년대 이후 급속한 퇴조를 나타내지만, 주로 노동운동을 통해 이루어졌던 한국인 공산주의자들의 운동은 상대적으로 매우 활발했다. 1930년대 초반 한국인들은 순적으로 일본 공산주의적 노동운동의 절반 가량을 차지했으며, 공산당원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천황제 일국사회주의를 주장한 사노와 나베야마의 전향은 많은 일본인 공산주의자들에게 영향을 끼쳤지만 이에 뒤따른 한국인은 (당연한 일이지만) 거의 없었다. 일본과 한국의 민족주의 차이가 이때처럼 뚜렷이 나타난 적도 없었다.

일본공산주의자들의 대량전향은 여러모로 일본제국주의 말기의 총력체제를 예감케 했다. 파쇼적 폭압이 물론 있었지만 그러나 민족의식이라는 점에서 국민적 흥분을 감당하지 못하고 흡사 제1차 세계대전 때 제2인터내셔널이 허망하게 무너졌듯이 임전태세 속으로 급속히 휩쓸려갔다. 모두가 천황제를 방자하여 전향해갔다. 천황은 부르주아지도 프롤레타리아트도 아닌 초계급적 존재라고 해서 전향성명을 할 때 편리했던 것이다(이 점은 현대 한국의 사상범이 전향서를 쓰면서 '민족주의'를 방자하는 경향과 비슷하다).

사범당국이 실시한 전향동기 조사에 의하면 1933년(만주사변시기)에는 ① 나이 ② 건강 ③ 성격 ④ 생활 순으로 되어 있던 것이 1942년(소위 대동아전쟁시기)에는 ① 국민적 자각 ② 가정관계 ③ 구금에 의한 후회 순으로 된다. 당연히 조선에서의 '임전태세'는 훨씬 덜 자발적인 대량전향 현상이었다. 그러나 상당한 대표적 지식인들은 '내선일체'가 민족적 평등을 실현시킨다는 거짓을 거짓으로 알면서 전향의 핑계로 삼았다.

전쟁이 끝났을 때 일본 전국에서 약 3,000명의 사상범이 석방되었다. 동경 예방구금소에서 비전향으로 16명이 출옥했으며, 그 중에는 조선인 김천해가

있었다. 조선의 예방구금소에서는 김철수, 강진, 허성택, 안기성, 장기경 등 22명의 공산주의자가 풀려났다고 전해진다. 조선인 중 가장 오래 구금된 기록은 17년이었다. 이들은 사상범의 회귀함, 일제에 대한 공통의 증오 등으로 인해 출옥 후 대단한 존경을 받았다고 한다.

해방 후의 전향문제

일제시대에 지조를 지켜낸 공산주의자는 거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전향문제에 대한 비판과 자기비판을 기피하여 이 문제를 모호하게 만들어 버렸다. 이 엄청난 사실이 지금 우리 사회의 병든 운동적 지적 풍토에 상당히 결정적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다. 해방 후에 그들이 전향문제를 기피한 이유는 좌익 내 종파들에 의한 해계모니 싸움을 위해 지도적 공산주의자들의 수상직은 과거를 덮어둘 필요가 있었고, 과거의 친일행각에도 불구하고 두둔하고 감싸야 할 세력을 자기 주위에 형성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들은 서로가 서로의 과거를 숨겨주고 서로의 약점 때문에 서로에게 발목이 잡혀 있었다. 종파주의는 이런 사실 때문에 온존되고 키워져 갔다.

패전과 함께 일본에서는 사상 전향이라는 장치는 없어졌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조선형사령 및 치안유지법의 폐지와 함께 없어졌다. 아니 없어졌다고 해야 옳았다. 그러나 친일세력의 재등장은 실질적으로 이를 온존시키는 결과를 가져온 것이다. 치열한 대좌익 투쟁에서 주로 미군정 포고령으로 검거된 좌익에 대한 무지막지한 고문이 가해졌으며, 헤아릴 수 없는 피검자들을 수사과정에서 사실상 전향시켜 밀정으로 만드는 전향 강요(프로퍼라고 불리는 이들 밀정의 70~80%는 나중에 그들의 상전에 의하여 기소, 투옥되었다는 증언들이 있다)와 탈당 성명이라는 사실상의 전향성명 강요가 자행되었으며, 이렇듯 좌익간부의 탈당성명이 자주 신문지상에 게재되었다. 이들은 모두 나중에 보도연맹으로 흡수된다. 탈당이라는 말을 주로 사용했던 것은 아마도 '전향'이 정치범에 가해지는 일제의 억압을 연상시켰기 때문인 것 같다.

전쟁 전 감옥은 백색테러가 횡행하는 무법지대였다. 1950년에 인민군에 의해 마포형무소에서 풀려난 정치범 중 5명만이 비전향이었다는 증언이 있다.

전쟁중에는 역시 탈당 혹은 투항이라는 이름의 사실상의 전향강요가 있었으나 형이 확정된 좌익수에게 형무소에서 전향을 강요하는 일은 거의 없었다. 다만 이 시기에는 얼어죽고 굶어죽고 맞아죽는 형무소의 일상 그 자체가 일상적

인 변절 강요의 고문현장이었다고 전해진다.

휴전협정 성립 이후 몇 개 형무소에서 좌익의 지도급 위치에 있었던 정치범에게 '진술서'·'자서전'이라는 이름의 사실상의 전향서를 요구하기 시작했고, 또한 형무소 당국이 정치범들을 대상으로 대한민국에의 충성 여부를 묻는 사상 동태조사를 실시, 그 대답에 따라 전향과 비전향으로 분류했다.

1956년에 '전향'은 제도화된다. 즉 1954년경부터 몇 개 형무소에서 일어난 정치범들에 의한 소내 조직사건을 배경으로(1955년에 있는 대전의 2·15사건은 가장 규모가 커 관련자 500명에, 입건 20명, 조사과정 고문치사 3명이라는 증언이 있다) 법무부장관의 전향·비전향 분리수용에 관한 훈령이 1956년에 시달된다. 이것은 해방 후 최초로 이루어진 '전향'의 공식화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로부터 본격적인 전향 공작작업이 시작되었다.

참고로 2·15사건 당시에 대전형무소에는 4,000명 이상의 수형자가 있었으며 그 중 좌익 정치범은 3,000명이었는데, 4·19 직전쯤에는 비전향 좌익수가 약 270명 정도였다고 한다(1950년대 후반 좌익 정치범의 수는 각 형무소마다 전체 수형자의 70 내지 80% 정도였다는 증언은 대체로 일치하고 있다).

4·19 직후 비전향 좌익수들이 사면 석방된 경우는 거의 없었다. 그러나 그들도 감형조치를 받았는데 간첩죄 무기수만은 감형조치를 받지 못했다. 이들은 지금까지 계속 감옥에 있으며 그 중 최장기 복역자는 43년째 감옥에 있는 김선명씨이다.

5·16 직후에 당국은 전국의 비전향 좌익수를 대전교도소에 집결 수용하였는데, 이때의 수가 765명이었고 여성 30명까지 합해 모두 800명 가까이 되었다.

1968년 이들은 5개 교도소에 분산되었다가 이내 4개 교도소에 수용되었는데, 1972년에 전국에서 약 400명이었고 1973~1974년에는 전국에서 감행된 살인적인 고문과정을 거쳐 다시 200명 정도로 줄어들었다. 이때 정부가 상당히 높은 정책수준에서 전향공작 전담반을 구성하고, 몇 사람을 죽이면서까지 전향을 강요하는 고문을 했던 이유는, 4·19 후에 무기에서 20년으로 감형되었던 빨치산, 부역계통 좌익수들의 만기출소 시기가 이 무렵에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고문으로도 전향시키지 못했던 좌익수와 이미 만기출소한 많은 비전향자들에 대해서 일제 말기와 똑같은 제도로 예방구금하거나 감시 감독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법률이 바로 사회안전법(1975년)이었다. 1989년까지 14년 동안 지속된 이 법에 의하여 150명 가량이 재판도 없이 구금되고, 16명이 옥사하고, 51명이 비전향 상태에서 출소했다.



▲ 지난 3월 북한으로 송환된 이인모 응을 기념하여 만든 북한 우표. 이응은 34년간 비전향 장기수로 복역하였다(연변조선족 동포로부터 입수)

민주화운동가족협의회의 통계에 의하면, 현재 대한민국 기결감옥에는 125명의 좌익 정치범이 수용되어 있는데, 이 중 간첩 80명 외에는 모두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 관계자들이다. 간첩 80명 중 37명이 비전향이며, 이 중에는 자신이 간첩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전향을 거부하고 있는 사람이 8명 있다.

전향의 여러 형태

전향은 전향으로서만 논할 때 별로 큰 의의를 갖지 못한다. 실은 전향은 비슷한 시대, 비슷한 처지에서 가능했던 비전향과의 대비 속에서 거론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전향만을 그림으로써 전향을 비판할 수 있는 지점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은 과거에 있었던 전향과 비전향에 관한 방대한 자료를 필요로 하는 일로서 지금의 우리에게 가능한 일이 아니다.

철저한 패륜과 배신인 전향에 대하여 우리는 시선을 보낼 필요조차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전향자를 욕하거나 응징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늘의 상황 속에서 사상적 실천적 영양소를 섭취하기 위하여 전향자와 마주보고 있기 때문이다.

지식인 전향자는 여러가지 전향이론을 개발하게 마련이다. "전향문제는 단순히 외적 동기에 의한 정치적 굴복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명제는 틀린 명제는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반성 그 자체가 다시 전향에 훌륭한 구실을 주는 경우가 있다. 그것은 일체의 외적 동기를 배제함으로써 전향에서 권력과 자기와의 내적 긴장이 부정되어 포기되는 데서 온다. 밖으로부터의 강제와 결과 일어나는 사상 변화인 전향이, 내부로부터 자발성을 수반하면서 이루어지는 회심 혹은 개심과 오버랩된다. 외적 동기가 내면화되어 내적 동기로 둔갑하면서 용인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전향이론이라는 것은 자발적으로 만들어지는 듯이 보이나, 많은 경우 사실은 알게 모르게 권력측 관리들에 의하여 그 틀이 주어지기도 한다. 그것이 일면에서는 진실을 표현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전향이론은 결국 운동 전체 혹은 사회 전체에 미친 영향을 가지고 그 정당성이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전향은 "권력의 강제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유형의 전향자들에게, 그 강제가 그로부터 빼앗으려고 했던 다음 상황에 대하여 물어봄으로써 전향의 정당성을 가늠해보아야 할 것이다.

왜 직업을 바꾸지 못했는가? 왜 붓을 쥐지 못했는가? 왜 투옥을 감수하지 못

했는가? 왜 불구가 됨을 감수하지 못했는가? 그리고 왜 죽지 않았는가?
 (인간이 스스로 죽을 수 있다는 사실에서 떠나면 전향을 비판할 수 없다. 전향을 거부하면서 감옥에서 죽은 사람들을 생각하며 자신이 죽음을 택하지 않고 살아남은 의미가 어디에 있는지를 정직하게 되묻는 것이 그 전향자의 정당한 전향론이 될 것이다).

전향 1: 고문에 의한 무조건적 굴복

전향의 결과로서, 자신의 체력이나 정신력 즉 자신의 능력에 실망한 상태에서 '은둔주의'로 나아갈지 모른다. "정치에는 무조건 질렀다"는 따위이다. 보편적 가치에 대한 이론적 충성을 지키지 못했던 죄를 내공시킴으로써 전향 경험의 긴장을 확대시켜가는 '실존주의'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제일 많은 경우는 자기비판을 거친 후 자신의 주의와 당으로 복귀하는 경우이다.

전향 2: 상황주의

우선 '집단전향'이 있을 수 있다. 안된다고 생각하면서도 따돌림당하는 일의 두려움에서 상황에 끌려간다. 다음으로 '출세주의' 그리고 모든 종류의 정치적 기회주의

전향 3: 가족주의

고립이나 고난 속에서 어린시절이나 혈연을 자꾸 미화, 이상화시킴으로써 그곳으로 회귀하려는 태도

비전향의 논리

전향을 거부하는 것은 의심의 여지없이 윤리적이고 옳은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사람들이 해왔듯이 전향문제를 단순한 선악 이분법으로 갈라 버리거나, 여러가지 당파적 고려로 모든 비전향을 일방적으로 칭송하고 마는 일은 비전향과 전향의 사상사적인 의미를 밝혀내는 데 도움이 되지 않으며, 따라서 거기에서는 미래를 향한 아무런 실천적 의미도 길어올리지 못할 것이다. 비전향=무오류라는 기계적인 심판이 아니라 각각의 조건에서 유연성을 가지고 무엇이 옳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1) 인민전선적 노선

인민전선적 노선은 비전향을 고수하면서 대중으로부터 고립되는 태도를 배척한다. 이것은 이들의 정치적 개성이 이념보다도 현실을 지향하는 강한 정열을 그 특징으로 하기 때문일 것이다. 많은 경우 인민전선의 지도자들은 '부작위의

전향 혹은 비전향'이라는 형태(이것을 비전향이라고 칠 수 있다면)로 전향 강요의 시련을 뚫고 나온다. 이들은 현실정치의 장에서 끊임없이 가능한 일과 불가능한 일을 분간하면서 가능과 불가능의 아슬아슬한 한계선상을 딛고 대중 속에서 가능한 일을 해나가려고 한다(예: 여운형, 허헌, 山川均).

2) 위장전향의 문제

완전 비전향이 후퇴의 마지막 선에서 비전향을 고수했다면, 위장전향에는 전진적인 도전이 있다. 참된 위장전향자는 비전향 가운데 일관된 연속성을 찾지 않는다. 그는 그 비전향의 일관성을 끊으면서까지도 실천활동 속에 일관된 연속성을 찾는다. 그에게는 현장의 투쟁이라는 실감만이 살아있다. 참된 위장전향자는 또한 비전향의 고난을 피하기 위하여 위장전향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승리를 향한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더욱 큰 고난 속에 뛰어드는 것이다. 항상 위장전향자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많은 경우 화가 머리 끝까지 치민 권력의 하급관리들에 의한 잔인한 고문이나 학살이다.

만일 당이 경험이 풍부하고 성숙되어 있다면 당연히 목적의식적으로 당원을 선택하여 위장전향의 지령을 내릴 것이다. 당이 그런 수준이 아니라면 위장전향자는 무시무시한 고독 속에서 자신의 정확한 정세 판단력과 강한 실천의지만을 믿고 활동을 해야 한다. 한 개인의 내부에서 거대한 당에 버금가는 전략과 전술이 통일되어야 하는 것이다. 수많은 위장전향자가 참담하게 실패하여 어둠 속에서 영원히 잊혀진 채 회한을 씹어왔다. 결국 무엇이 위장전향인지는 전향 후의 행동으로써 증명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3) 완전 비전향

국가권력을 비판하는 관점이 그 사회에 구축되기 위해서는 그 사회의 어디엔가 그와 같은 관점이 육체적으로도 고수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완전 비전향은 계급의 적과의 비타협이라는 점에서는 원칙적이고 윤리적이다.

그러나 완전 비전향은 현실 정세를 무시한, 미래의 승리라는 관념의 세계에 틀어박혀 대중과 유리된 채 사고활동을 정지한 상태에서도 가능한 것이다. 이것이 완전 비전향자들이 때때로 빠질 수 있는 함정이다. 비전향 즉 계급의 적과의 투쟁에서 보이는 불굴의 태도와, 정치상의 전략이나 전술의 탄력성이라는 것이 본질적으로는 결코 상호 모순되지 않는다는 점을 자각하는 것이 비전향자가 갖추어야 할 조건이다. 비전향자는 비전향자이지 비전향주의자는 아니다.

전향문제 논의의 의의

사상전향문제는 파시즘이 지배하는 현대세계를 통하여 가장 강한 증오와 절망을,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가장 큰 영광을 낳았다. 또한 그것은 그 시대를 산 모든 사람에게 수많은 종류의 감정의 갈등을 안겨준 중요한 문제이다. 우리들은 과거의 전향 체험을 지금 다시 체험함으로써 현대의 사상적 전통의 가장 깊은 곳에서 폭발적인 활력을 길어올릴 수도 있을 것이다. 사상전향문제에 대한 접근방식은 여러가지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사상사적 방법이야말로 우리가 우리의 나약하고 잘못했던 과거를 딛고 더욱 강건한 삶으로 일어서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나는 믿는다.

“권력의 강제로 말미암은” 사상전향 즉 발가벗은 권력의 폭력은 지금도 우리 사회에 엄연히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그 ‘제도’ 하나가 없어진다 하더라도 파쇼국가의 구조는 어떤 형태로든 우리에게 ‘사상전향’을 강요하기를 멈추지 않을 것이다. 과거 우리들은 어떻게 이것에 대결해왔는가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대결해야 하는가. 해방 직후 우리의 ‘아버지’들은 이 문제를 회피했다. 그 결과 우리는 이 문제에 관하여 남의 눈치만 살피며 지금 입을 닫고 있지 않는가. 앉아서 당하고만 있지 않는가. 나는 전향문제에 대한 논의가 진보세력의 내부분열을 가져오고 힘을 약화시킨다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진보세력은 전향문제와 같은 내부적 취약점에 대한 검토를 피하고, 따라서 그 취약점을 안은 채 성장할 수는 없다. 해방 직후 우리의 진보세력이 전향문제 등 몇 가지 우울한 문제들을 검토하고 이를 견디었다면 강고하고 건강한 정치조직을 만들 수 있었을 것이다.

과연 우리는 이 우울한 문제, 사상전향문제를 피해갈 수 있을 것인가.

전향문제를 외면한 시대가 수십 년, 수백 년 계속된다 하더라도, 결국 사상전향 체험의 발굴은 우리의 ‘자식’들이 이를 피해버린 ‘아버지’에 대한 원망의 한숨을 쉬며 수행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 문장의 양상은 처벌을 수 있는 사형가량이 민주주의가 아니다.

인권 자료실		
등록일	분류기호	자료번호
	B7-2	102

준법서약서와 전향서

- 그 종이 한장의 의미

박원순 (변호사, 참여연대 사무처장)

1. 서론

“인간의 내심은 법적규제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따라서 내가 여기에 갇힌하려는 나의 내심을 직접적으로도 간접적으로도 근거로 삼아 나의 신체를 구금해 놓을 판정을 내릴 권한은 당신들에게 없다. 나의 내심을 심판할 권한이 없는 당신들에게 내가 나의 내심을 고백해야 함은 분명히 모순이다. 그러나 나는 지금 감히 이런 모순된 행동을 하려고 한다. 그것은 내가 한낱 처분의 대상이 아닌 한 사람의 인간임을 주장하기 위함이다.”¹⁾

지난 7월 1일 박상천 법무부장관은 청와대 업무보고를 하면서 전향제도를 폐지하고 그대신 준법서약제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즉 박장관은 “건국 50돌 기념 8.15특사와 관련해 공안사범에 대해서도 과감한 관용조치를 검토하고 있다”면서 “이에 앞서 전향제도에 따른 양심의 자유 침해 논란을 배제하기 위해 전향제도를 폐지하고 준법서약제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보고 했다²⁾.

민가협, 인권운동사랑방, 민변, 참여연대 등 인권단체와 시민단체들은

1. 서준식, 나의 주장: 반사회안전법투쟁기록, 형성사, 1989, p.225
 2. 1998.7.2자 한겨레신문 기사

대체로 이러한 준법서약서제도가 전향제도의 연장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한 반면 언론은 대체로 양심의 자유를 보장한 인권진전이라고 평가하였다.

“(전향제도의 폐지는) 정부가 전향제도에 대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법제도임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본다. 그러나 한편 전향제도를 없애겠다고 하면서도 모든 공안사범들에게 서약을 받겠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또 다른 전향제도의 존속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우리는 떨쳐버릴 수 없다. 양심수에 대하여 석방을 미끼로 서약서를 요구한다는 작태가 헌법에 보장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점에서 과거 정권의 행위와 조금도 변한 것이 없기 때문이다. - - - 세계 여러나라의 인권상황에 큰 관심을 갖는 인권단체로서 모든 정치범에게 그런 반성문을 전제로 해서 석방하겠다는 정권을 우리는 듣지도 보지도 못했다. 원래 전향제도가 일제의 잔재이며 전향제도는 민주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반인권제도이므로 여기에 대해서는 다른 제도로 대체할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철폐해야 하는 것이다.”³⁾

“정부가 8.15 사면부터 시국사범등 양심수에 대해 전향제도를 폐지하고 준법서약제를 도입하기로 한 것은 인권의 가치를 중시하는 새 정부의 방향을 분명히 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이전 정부와 차별성을 갖는 새 인권기준을 적용해 사면대상을 대폭 확대함으로써 국민화합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 - -”⁴⁾

이렇게 하여 준법서약제도는 전향제도를 대체하여 이나라의 양심수의 석방기준, 행형기준으로서 새롭게 자리매김하였다. 이것은 과거 악명이 높은 전향제도의 존재조차 인정하지 않았던 정부가 그 존재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더 나아가 폐지한 것은 큰 진전이라는 사실을 부정할 사람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잔존한 준법서약서는 많은 문제를 남기고 있다.

1930년대의 전향제도에서부터 1998년의 준법서약제도까지, 이 나라의 민주주의 발전의 경로가 이토록 험난하고 더디다는 것을 상징하는 사례

3. 민가협.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사랑방 3단체의 1998.7.1자 성명서

4. 1998.7.2자 한겨레신문 기사

가 될 수밖에 없다. 50년만에 평화적 정권교체를 이룩했다는 김대중정부, 독재의 희생물로서 수난의 대명사였던 민주화운동과 야당의 지도자가 대통령이 된 국민의 정부,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고 자유가 들꽃처럼 피어나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약속을 하고 다니던 분이 대통령이 된 나라에서 또다시 양심수에게 준법서약서를 요구하고 있다. 그 종이 한 장에, 앞으로 법 잘 지키겠다고 서약서 하나 쓰는 것이 뭔데 이 난리냐고 아마도 사람들은 말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껏 바로 그 쉬운 짓을 하지 않아 수십년을 버틴 사람인데 이들에게 그 종이 한 장, 그 말 한마디가 얼마만한 무게를 지니고 있는지 생각해 보지 않은 사람은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없다. 그래서 그런 짓을 하지 않고도 내주었던 것이 노태우, 김영삼 정부였는데 최고의 민주주의 정부라는 이 '국민의 정부'하에서 그 서약을 하지 않는다면 절대로 내보내 줄 수 없다는 위협을 일삼고 있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21세기 벽두에 우리가 진전시켜야 할 민주주의의 길은 아직 험하고 멀다는 것을 알겠다.

2. 전향제도의 시작과 끝

(1) 전향제도의 역사

전향제도는 일본제국주의의 창작품이다. 1930년대 일제의 군국주의 강화에 따라 민족해방운동을 억압하기 위한 모든 수단이 총동원되었다. 1936년 제령 제16호로 조선사상범보호관찰령을 제정하여 치안유지법 위반자 중 기소유예, 집행유예, 가출옥, 형집행종료가 된 자들에 대하여 그들의 사상활동을 단속하고 감시하는데 활용하였다. 경성, 함흥, 청진, 평양, 신의주, 대구, 광주 7개소에 보호관찰소를 마련하고 공산주의자, 독립운동가, 민주주의자로서 전향하지 않은 자들을 이른바 사상범이라고 규정하여 보호관찰대상으로 삼았다. 이때 확립된 전향의 기준은 1933년 사범성 형사국장 통첩 치안유지법위반 수형자에 대한 조사방법의 건에 의하여 확립되었고 이에 따르면 “국체변혁사상, 혁명사상을 방기했는가 여부”였으나 전시파쇼체제가 강화되면서 일본정신을 체득하여 실천하기에 이르는 것을 전향의 최종단계로 삼았다⁵⁾.

5. 조국, “한국 근현대사에서의 사상통제법”, 역사비평 1988년 여름호, pp.326-328 참조

이러한 일제하의 악독한 법제도가 독립된 대한민국의 한 법질서로 자리잡았다는 사실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었다. 1948년 국가보안법을 제정한 후 좌익들에 대하여 보도연맹을 조직하고 그 가입을 강제하고 사상적 전향을 시도하였다. 1956년에는 국가보안법 파동 이후 국가관 확립을 내용으로 하는 조직적 전향이 시행되었고 70년대 초반 유신헌법이 만들어지고 이어서 사회안전법이 제정되었다. 감옥안에는 전향전담기구가 만들어져 각종 테러를 통해 전향이 강제되었다. 온갖 차별대우와 가혹행위가 이어져 비전향자들은 '굶장역'을 살아야 했다. 1980년대 이후 학생·노동자·재야인사 등 시국사범으로서의 장기수가 양산되면서 그 이전의 남파간첩 등 좌익 장기수들의 전향공작 실태가 함께 알려졌다. 전향제도에 대한 비판과 중단의 요구가 가중되었다. 그럼에도 1998년 7월 이전까지 지속되었다.

(2) 전향제도 헌법소원 경과

대전교도소에 수감중인 비전향장기수들은 지난 1992.2.15 사상전향제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즉 이들은 사상전향을 사실상 강요하는 법률적 뒷받침이 되어온 수형자분류처우규칙 제2조에 대해 이 조항이 위헌이라는 소송을 제기한 것이었다. 이 헌법소원의 주도적 역할을 한 민가협 등은 기자회견 당시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분단의 모순속에 자신의 양심을 굳굳이 지켜내고 있는 비전향장기수들은 이번 헌법소원을 계기로 사상을 전향치 않았다는 이유로 길게는 30년에서 42년까지 이르는 무한궤도의 옥살이를 해야 하며 목숨마저 전향의 흥정거리로 전락하는 참혹한 장기수의 실태를 폭로하고 궁극적으로 분단과 냉전의 산물인 사상전향제도의 철폐와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되찾고자 합니다.”⁶⁾

그러나 법무부는 이에 대해 청구인들이 주장하고 있는 양심의 자유

6. 1992.2.15차 민가협·불교인권위·천주교인권위·한교협인권위·고난받는이들과함께하는모임·전국연합인권위 등의 기자회견문 참조.

침해가 아니라며 심지어 사상전향제도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본건 규정의 목적은 청구인들에게 사상전향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들로부터 다른 일반 재소자를 보호하고 나아가서는 민주사회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으며 - - -. 다만 청구인들과 같은 확산범들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파괴하려는 사상을 포기하지 않을 경우 본건 규칙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므로 그들이 본건 규칙의 적용을 받기 위하여 자신의 사상을 포기하게 되는 것은 본건 규정으로 인한 간접적인 결과라 하겠습니다.”⁷⁾

결국 이러한 헌법소원도 몇 년을 묵혀두다가 헌법재판소에서 아무런 소득없이 기각되고 말았다. 인권과 사상의 자유, 평등권이 여지없이 법의 이름으로 또 한번 유린되는 순간이었다.

3. 준법서약서와 양심의 자유

(1) 양심수들이 느끼는 준법서약서

준법서약제도가 과연 인간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인지를 살펴보기에 앞서 현재 감옥에서 형을 살고 있는 양심수들이 이 제도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알아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 최근 가족들이나 외부인사들에게 보내온 서한 중에서 준법서약서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부분을 모아보았다.

① “면회시간 내내 그 놈의 서약서 문제로 갑론을박, 티격태격, 아웅다웅 하느라고 다른 얘기는 하나도 못했거든요. 빛나던 청춘 다 보내고 열 네해째 갇혀지내는 제가 안타까워서 그러시는 줄 잘 알면서도 ‘사람이 다니는 대문을 놔두고 개구멍으로 기어나갈 순 없다’고 원칙적으로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양심지키기’를 통하여 세상의 자유를 넓히고 만인의 자유를 다져나가고 있다고 자부하는 사람이, 스스로 인간의

7. 헌법재판소 92헌마 32호 수형자분류처우규칙 제2조에 대한 헌법소원에 관한 법무부의 의견서 p.7

존엄과 가치를 위해 싸우는 인권운동가로 자칭하는 사람이 어떻게 양심의 자유를 훼손하는 서약서와 타협할 수 있겠어요. - - - 왜 제가 서약서를 안쓰고 그냥 간혀 있겠다고 하느냐구요? 권력 앞에서 제가 가지고 있는 내심의 생각을 게워내고 심사받아야 한다는데 동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마음속으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던 간에 그것은 나의 자유이고 국가권력은 간섭할 수도 없고 간섭해서는 안됩니다. 그 절대적인 자유를 저더러 포기하라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어요? - - - 차리라 서약서에 불복종하여 계속 간혀있는 것이 제 '양심의 법정'에선 떳떳한 일입니다."8)

② “전 요즘의 서약서 논쟁을 바라보며 고등학교시절의 자율학습이란 걸 떠올렸습니다. 말 그대로 자율적으로 공부하라는 자율학습에 왜 그리 조건은 많았는지, 지정된 좌석에, 정해진 시간에, 화장실도 마음대로 못가던 그 분위기 하며- - -. 허용보다는 제한과 한정 의 논리들이 저를 꼭꼭 감쌌던 기억이 있습니다. 물론 그 자율학습이란 걸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선안에 들어야지 가능했던 것이었지요. 자율은 '알아서' 라는 것에 그 생명이 있지요. 조건있는 자율은 타율에 불과할 뿐입니다. 자율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구요. 그건 이미 타율이 들어가 있는 것이기에 아무리 자율의 가면을 쓰려 해도 감춰지지 않는 것이겠지요.”9)

③ “엇그제는 전향제를 폐지하는 대신 준법서약을 통해 정치범을 석방하겠다는 기사와 그에 따른 논란들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수십년간 옥살이를 하고 계시는 장기수들과 김성만, 강용주, 백태웅, 박노해, 황인욱씨 등 저희들과 가까운 세대이고 고난의 길에 선두에 있었던 사람들이 3.13 사면에서 제외되고 또다시 준법서약이라는 이름의 전향을 강요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 안타까움과 서글픔 그리고 분노를 함께 느낍니다. 또 그들의 가족이 느낄 고통과 시련에 대해서는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 - - 정치적 신념과 지조는 어떠한 폭력과 회유로도 꺾을 수 없으며 인간다운 세상을 만들고자 투쟁하는 청년들의 기개와 열정은 총칼로도 꺾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줄 것입니다

8. 1998.7.15자 강용주의 편지 중에서.

9. 1998.7.21자 이환영의 편지 중에서.

④ “이번 8.15 특사도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이 없다는 격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전국적으로 장기수 선생님 17명이 있는데 준법서약서 쓸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말만 바꾼 전향서입니다. 역대 정권도 준법서약서 쓰라고 한 적이 없는데 50년만에 정권교체 되었다고 하면서 서약서를 받고서야 석방하겠다는 발상이 군사정권보다 더 나은 점이 없습니다. 북쪽이 고향인 장기수들은 서약서를 쓰면 통일이 되어도 고향에 못가게 하는 고약한 술책입니다. 그래서 비인도적인 처사로 역사에 오점을 남길 것입니다.”¹¹⁾

이 언급들을 보면 대체로 현재 옥중의 양심수들은 준법서약서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과거의 전향제도와 별다른 것이 없으며 자신의 양심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제한하는 것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2) 침묵의 자유와 준법서약서

준법서약서가 특히 양심의 자유와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 것은 침묵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는 점에 있다. 침묵의 자유란 “자기의 양심상의 결정을 외부에 표명하도록 강제받지 아니하는 자유”를 말한다. 양심의 자유 또는 사상의 자유의 한 부분으로써 인정되는 자유이다. 헌법 제10조 제2항의 불리한 진술 거부권은 형사절차에 있어서 고문 등을 방지하여 인신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것이므로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침묵의 자유와는 구별된다. 중세 유럽등지에서 있었던 이단심문이라든가, 특정 정치체제에 대한 지지, 반대의 의사를 표현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양심의 자유안에 포함되어 있는 침묵의 자유 침해이다¹²⁾. 그러므로 법질서에 대한 지지의 의사를 기재하여 준법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법질서를 침해하여 외부적인 행동으로 드러내 처벌받는

10. 1998.7.3자 민경우의 편지 중에서.
 11. 1998.7.13자 장기수 리경찬 편지 중에서
 12. 권영성, 헌법학원론(상), 법문사, 1979, p.452

것과 별개의 문제로서 양심의 자유, 침묵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명백하다.

침묵의 자유는 물론 사실에 대한 지식 또는 기술적 지식은 포함되지 아니한다¹³⁾. 증언의 거부나 취재원의 비익권이 실정법상 인정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다만 단순한 사실에 관한 지식일지라도 그것이 정치상의 신념이나 세계관과 밀접하게 결부된 것일 때에는 침묵의 자유에 포함된다. 침묵의 자유에 의하여 보장되는 것은 도덕적, 윤리적 판단인 양심, 또는 정치적 신념, 세계관등과 같은 사상 또는 양심 및 사상과 결부된 사실이다. 준법서약서는 단순한 사실이나 기술적 지식에 관한 기재가 아니라 자신의 정치적 신념, 국가관 등에 대한 구체적 의견과 신념을 기재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므로 이것은 명백히 양심의 자유 및 침묵의 자유가 보호하는 대상에 속한다.

또한 준법서약서는 직접적으로 압력을 가하여 양심을 표명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외적 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양심의 추지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으로서 위헌이다. 제2차세계대전 당시의 십자가 밟기, 충성선서 등이 이러한 예에 속한다¹⁴⁾. 이것도 넓은 의미에서는 당연히 양심의 결정을 표명하도록 강제하는 것으로 양심의 자유, 침묵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다.

양심의 자유는 절대적인 권리이다. 양심상의 결정은 자신의 도덕적, 윤리적 판단에 따라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인가에 대한 확신을 말하는 것이고 그것은 내심의 작용이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도 제한할 수 없는 절대적 자유에 속한다. 우리나라에서 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하는 양심도 규제의 대상이 된다고 하는 견해가 과거 없지는 않았지만¹⁵⁾ 대다수 학자들은 적어도 그것이 내심의 자유는 절대적으로 제한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하는 점에 동의한다. 만약 내심의 양심조차 처벌이 가능하고 규

13. 이경호, 양심의 자유보장과 그 문제점에 관한 연구 - 1982년도 동국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p. 21

14. 권영성, 위의 책, p.453

15. 문홍주, 박일경, 한태연 등의 헌법학자가 그러하였다.(권영성, 위의 책, p.452) 한태연은 "양심의 자유는 법률의 일반적 유보에 의한 제한을 받는 까닭에 국가는 개인의 양심에 위배되는 강제를 할 수 없는 동시에 개인의 양심의 자유는 또한 국가의 존립, 안녕의 유지와 같은 국가의 기본적 목적에 의해 제한되며, 따라서 양심의 자유는 최소한으로 개인의 국가에 대한 기본적 의무에 의하여 제한된다"고 하였다. 박일경은 "양심의 자유가 국가권력에 의한 신념의 강제 내지 금지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점에서는 헌법의 파괴를 주장하는 사상은 자유를 보장받을 수 없다고 논단할 수 밖에 없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소수의 학자들은 대체로 유신헌법 제정과 지지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제가 가능하다고 한다면 그것이 가져올 가공할 상황을 상상해 보라. 아마도 내심의 생각과 사상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심사받고 수사받아야 하며 자신의 일기와 중얼거림마저 안전을 보장받지 못할 것이다. 아마도 그것은 중세시대의 마녀재판이나 상호간의 의심과 밀고에 의해 공포의 생활을 강요당하는 동물농장의 상황으로 되돌아갈 것임이 틀림없다.

(3) 준법서약서와 전향서의 동일성과 차별성

준법서약서와 전향서는 무엇이 다르고 같은가. 일부에서는 전향서는 사상의 전향을 강요하는 것임에 비해 준법서약서는 단순히 법질서를 지키겠다는 각서에 다름아니니 큰 진전이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사실상이 두가지 서면의 차이가 있지 않으며 오히려 준법서약서는 전향서의 확대판이라는 점에서 그 남용이 더욱 우려스러운 것이다.

첫째, 전향서든 준법서약서든 간에 국가가 개인에게 일정한 신념의 표현을 강요하는 점에서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 전향서는 공산주의 사상을 자유민주주의 사상으로 바꿀 것을 요구하고 있고 준법서약서는 그러한 사상의 전향을 요구하고 있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자유민주주의 사상을 존중하고 그 법질서를 지킬 것을 다짐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내심의 의지와 신념을 표현할 것을 강요한다는 점에서 다를 것이 없다.

둘째, 실제에 있어서는 과거에도 전향서라는 이름만으로 양심의 강제를 하지는 않았다. 각서, 생활계획서등 다양한 이름으로 사실상의 전향과 사상의 변경을 요구해 왔다¹⁶⁾. 준법서약서 역시 사실상의 전향과 다를 것이 없다. 그 구체적인 기재의 내용과 관계없이 한 개인에게 자신이 지지하든 하지 않든 자유민주주의 법질서를 존중하겠다는 신념을 피력할 것을 강요하고 있기 때문이다.

셋째, 전향서는 국가보안법 위반자들에 한정해서 강요했던 것에 비하여 준법서약서는 모든 시국사범에 확장하여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

16. 예컨대, 장의균의 경우 다음과 같이 회고하고 있다. "얼마후 3심이 끝나자 저에게도 전향공작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우선 재심을 위해 전향할 수 없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교회사들은 저의 입장을 이해한다면서 그러니까 전향서가 아니라 각서만 쓰라는 거더라고 했습니다. 그래도 제가 거부하자, 그러면 할 수 없다, 당신도 할 수 없이 15사(3,40년째 살고 있다는 북한 공작원들이 있다는 곳)에 가야겠다고 위협했습니다."(1992.11.2자 장의균의 헌법소원이유소견서, p.23)

려 전향서에 비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대상이 훨씬 확장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인권단체들이 전향제도의 확대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넷째, 전향서와 준법서약서는 다같이 개인사에 대한 최소개입의 원칙, 상대적 다양성의 원칙을 최고 원리로 하는 서구자유민주주의 질서에 반하는 것인 반면 개인의 사상과 신념까지 국가의 단일한 이데올로기와 이념에 일치시키고자 하는 한국적 국가주의와 봉건적 관료주의의 소산이다. 이른바 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사상에까지는 용납하기 어렵다는 방어적 민주주의 이론에 따라 실체는 독재옹호론으로 흐르고만 역사성을 지닌 이론인 것이다. 더구나 내심의 자유까지 침범하고 관리하려는 것은 민주주의의 최소한의 원칙마저 유린하는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전향제와 준법서약서는 끊임없이 개인의 사상과 양심을 심사하고 국가가 동의하는 사상과 이념에 대한 다짐을 받아두어야만 안심하는 국가주의자들의 반민주주의적 사고에 다름아니다¹⁷⁾.

(4) 몇가지 사례

1) 미국의 매카시즘과 충성심사

제2차세계대전의 종식, 냉전시대의 개막과 강화와 더불어 미국에서 유행한 매카시즘은 민주주의와 인권의 시련의 시기였다. 대규모 '용공분

17. 사실 경찰과 검찰의 피의자신문조서, 법정의 공판과정등에서 공안사건 피의자, 피고인들은 끊임없이 자신의 사상과 양심에 대해 질문받고 그 답변에 의해 심판받게 된다. 다음 질문과 답변사례를 보라. (서준식, 위의 책, pp.37-39)

문: 용의자는 교도소 등에 재소중 전향한 사실이 있는가요

답: 없습니다.

문: 전향을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 - -

문: 그러면 현재 대한민국국가체제는 어떠한 것이라고 생각하는가요

답: 자본주의국가라고 생각합니다.

- - -

문: 용의자는 대한민국에 충성할 의사가 없는가요

답: 대한민국의 현정권에 대해서는 충성할 의사가 없습니다.

문: 그러면 어떤 정권에 충성을 하겠는가요

- - -

자색출운동'이라고 할만한 이 운동은 민주주의 위축과 인권의 침해, 다수의 희생자를 낳았다. 국내 치안분과위원회 위원장이었던 상원의원 매카시의 입에서 거명되는 말 한마디로 멀쩡한 사람이 공산주의자 또는 용공분자로 낙인찍혔다. 아시아문제의 권위였던 리치모어 교수, 보렌 전 소련대사, 하버드대학의 경제학교수 스위지등이 바로 그러한 희생자들이었다. 그 과정에서 반미활동, 파괴적 행동, 사회주의적 사고 등에 대한 끊임없는 조사와 배제의 시도가 이루어졌다.

특히 공직자와 공직후보자들의 임용 또는 재직요건으로서 헌법 또는 국가에 대한 충성을 선서시키거나 그들의 반국가성을 심시하여 임용을 거부하거나 공직을 박탈하는 이른바 충성심사가 미국에서 도입되어 논란이 일었다¹⁸⁾. 각 주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연방공무원들에 대해서도 이러한 심사가 보편화되었다¹⁹⁾. 심사의 기준이라는 것이 광범하고 애매하여 인권침해와 부적정판단의 가능성이 높았다. 예컨대 이런 식이었다²⁰⁾.

- a. 사보타지, 간첩행위 또는 태업자, 간첩으로 믿어질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조사대상이 되는 사람에게 자발적 지원의도를 가지고 친밀하고 동정적으로 관계를 가지는 일
- b. 반역적 행동 또는 의견을 고무하는 것으로 이해되는 반역, 저작 또는 행동
- c. 미국정부의 현존하는 헌법형태를 변경하기 위한 폭력에 의한 혁명의 주창
- d. 미국에 불충을 나타내는 사정하에 있는 사람에게 비밀로 분류되거나 비공개 문서나 정보를 의도적으로 허가받지 않고 공개하는 일
- e. 미국의 이익에 우선하여 다른 정부의 이익에 ²⁰⁾공화기 위한 계산된 행동을 하거나 기도하는 일
- f. 외국이나 국내의 조직, 협회, 운동, 그룹 회원이 되거나 관

18. 충성심사를 제도화하고 있는 법률로서는 Hatch (Political Activity) Act 1939, Truman Loyalty Program(Loyalty Order) 1947, Eisenhower Security Program 1949등이 있다.

19. 자세한 것은 Eleanor Bontecou, The Federal Loyalty-Security Program, Cornell University Press, Ithica, 1953 참조.

20. Air Force Regulation No. 35-62, May 2, 1949, Part III, Disloyal or Subversive Military Personnel.

계를 가지는 일

이러한 충성심사제도가 합헌이라는 견해가 없지 않았으나²¹⁾ 그후 국가의 충성심사를 위헌이라고 본 판례들에 의해 전복되었으며²²⁾ 더글라스 대법원 판사는 이러한 충성심사에 대해 법의 정당한 절차가 아니며 페어플레이 정신에도 어긋난다고 하고 있다. 위 판결에서는 노조의 간부에게 공산주의자가 아니라는 선서진술서를 제출케 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판시한 것이었다.

2) 양심에 의한 병역거부자와 국기경례거부

양심과 종교적 신념에 의해 병역을 거부하는 것이 양심의 자유 범주 안에 들어가는지가 큰 쟁점으로 되어 왔다. 우리나라의 경우 “피고인이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종교를 신봉하고 그 교리에 그리스도인의 양심상의 결정으로 군복무를 거부한 행위는 응당 병역법의 규정에 따른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함으로써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²³⁾. 그러나 양심적 결정에 따른 징총거부, 군복무거부행위에 대해서는 서구 여러나라에서 이를 합법화하려는 노력과 운동이 이루어져 왔다. 제2차세계대전 중의 전쟁반대입영거부²⁴⁾와 베트남전쟁 참전거부운동은 특히 유명하다. 1960년대 이후 양심과 종교상의 이유에 의한 병역거부를 합법화하는 조약의 초안이 마련되고 이를 국제적으로 확산하려는 시도가 본격화되었다²⁵⁾. 이에 따라 여러나라에서 그러한 양심적인 병역거부가 합법적으로 보장되었다. 서독기본법은 “누구도 그 양심에 반하여 징총병역을 강제받지 아니한다”(제4조3항)고 규정하고 있으며 미국의 일반군사훈련 및 병역법 제6조3항 역시 종교상의 교육이나 신념에 의한 경우 병역거부를 인정해

21. 일리노이주 행정공무원직에 지원한 원고에 대하여 주헌법의 옹호를 서약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대법원으로부터 거부당하여 원고가 상고하자 미국 대법원은 “주는 법원의 행정을 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 주헌법옹호의 서약을 요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Summers, In Re 325 U.S 561, 1945. 김철수 판례교재 헌법, 법문사, p.282 게재)

22. American Communications Association v. Douds, 339 U.S 382 (1950), United States v. Brown, 381 U.S 437 (1965)등이 있다.

23. 1969.7.33 대판 69도 934 판결 참조.

24. 자세한 것은 Harry R. van , Exercise Conscience Dyck : A WW II Objector Remembers, Prometheus Books, Buffalo, New York, 1990 참조.

25. 자세한 것은 International Peace Bureau, The Right to Refuse Military Service and Orders : A Working Paper, Geneva, 1969 참조.

왔다²⁶⁾.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벨기에 등에서도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법률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종교적 윤리적 확신에 의해 전쟁에 종사하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병역을 강제한다면 그것은 신교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서구 민주주의의 사상적 기반하에서 이러한 병역거부자허용은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양심과 종교적 신념에 따라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거부할 수 있는지 하는 문제도 양심의 자유와 관련된 논쟁거리가 되어 왔다. 미국 판례는 당초 “정치 사회의 당면관념에 반하는 종교적 신조를 가졌다는 사실이 곧 그 시민을 정치적 의무로부터 면제하게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이유로 국기경례거부를 인정하지 않았다²⁷⁾. 그러나 그후 1943년에 이르러 Barnette사건에서 “원고들이 국기에 대한 경례를 거절하는 것은 다른 개인들과 권리의 충돌을 가져오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 이를 방해하거나 부인하는 것도 아니다. 또한 원고들의 행동은 평화로우며 질서가 있어 법적 정당성을 해하지도 않는다. 이렇게 공공질서에 영향이 없는 것이라면 개인의 양심을 제한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하여 국기경례를 거부하는 자에게 불이익처분을 내리는 것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²⁸⁾.

이상의 두가지 사례는 사실상 양심의 자유의 실현과정에서 생겨난 쟁점들이다. 그러나 준법서약서 문제는 양심의 외부적 실현과정이라 아니라 양심의 내면문제에 불과하다. 그러한 내면의 양심을 굳이 밖으로 드러내 일정한 의사를 표현할 것을 강요한다는 점에서 유례가 없는 양심의 자유의 침해사건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4. 시대의 양심과 양심수

(1) 새정부의 역사적 위치

김대중정부는 해방이후 야당에 의한 평화적 정권교체에 의해 들어선 최초의 정부라는데 이론의 여지가 없다. 그만큼 이 정부는 민주주의적 절차에 의해 들어선 가장 높은 정통성을 자랑하는 정부라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김대중 대통령 스스로 대통령 당선직후부터 민주발전

26. Universal Military Training and Service Act, 50 U.S.C.A App. §456 j

27. Minersville School District v. Gobitas, 310 U.S 586, 1940

28. West Virginia State Board of Education v. Barnette, 319 U.S 624

과 시장경제의 두 축을 가장 중요한 국정지표로 내세우고 있다. 그만큼 민주주의의 복원은 이 정부의 핵심적인 과제로 자타가 공인하고 있는 셈이다.

과거 역대 정부는 일인장기독재정권, 군사독재정권, 문민독재정권이 라는 이름 등으로 '독재'의 망령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다. 그 기간동안 억압적이고 권위주의적인 통치수단이 동원되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피해자들이 생겨났다. 수많은 사람들의 학살, 투옥, 고문, 재산약탈이 이루어졌다. 때로는 법의 이름으로 버젓이 재판이 이루어졌지만 실제로는 국가의 폭력적인 장치의 실현에 다름 아닌 경우가 많았다.

김대중정부는 분명 그러한 독재를 벗어난 민주적 정부임에 틀림이 없다. 그러나 문제는 스스로 독재정부가 아니라는 점에 만족할 수가 없고 과거정부가 뿌려놓은 불행의 씨를 거두지 않으면 안된다. 수많은 의혹사건과 억울한 사건들이 밝은 햇빛을 기다리고 있다. 진정으로 새정부가 민주적인 정부라고 한다면 과거 역대정부가 잘못된 인권침해사건들에 대하여 전면적인 진상조사, 가해자처벌, 피해자배상 및 원상회복, 새로운 역사 기술, 기념관과 문서보관소의 설치 등 총체적인 과거청산작업을 벌여야 한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이 국민적인 '진실과 화해 위원회'를 설치하고 과거 인종차별정권의 가혹한 행태를 조사하고 이에 대해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과거청산작업의 한 형태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작업을 게을리하고 장래 민주화와 인권합치적인 정부를 만들겠다는 것은 공론이 될 수밖에 없다. 민주주의를 온전히 뿌리내리고 인권정책을 편다는 것은 결국 법무당국, 사법부, 경찰 등 치안기관들을 동원하여 그 공직자들과 함께 할 수 밖에 없는 일이다. 그런데 과거 민주주의를 유린하고 인권을 침해하는데 앞장서거나 협력한 공직자들이 그대로 남아 있고 또한 이들이 그러한 '더러운 전쟁'을 수행하는데 사용한 악법체제가 그대로 남아 있는 상태에서 새정부가 민주주의와 인권을 제대로 지킬 수는 없는 노릇이다.

(2) 양심수의 역사적 이해

양심수는 그와같은 과거청산작업의 상징적인 존재이다. 양심수는 기본적으로 지난 군사독재시대와 그 영향이 잔존하던 전환기적 시대에 양산된 군사독재와 악법시대의 유산이다. 사법제도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악법이 활개를 치던 시대에 온전한 적법절차와 법치주의, 민주주의의 원리에 따라 재판받지 못했던 시대의 희생물이었다. 새로운 정부가 과거의 군사독재 또는 그 영향이 강하게 잔존하고 있는 유사권위주의정부와 차별성이 있는 정부라면 마땅히 과거 정부하에서 만들어진 양심수에 대해서 과거와는 다른 접근을 할 수밖에 없다. 과거 정부가 내세운 전향제도를 폐지하는 것은 옳다. 그러나 그 대신 준법서약서를 강요한다는 것은 바로 그 양심수들이 과거에 법을 지키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법을 지킬 가능성이 적으니 법을 준수하겠다는 각서를 쓰라는 것이다.

오늘날 석방을 요청하고 있는 장기수에는 세가지 형태가 있다. 첫째는 북쪽에서 남파된 공작원으로 간첩죄를 적용받은 '초장기수'이고 둘째는 군사독재 정권하에서 당국에 의해 조작된 이른바 '조작간첩'이고 셋째는 학생·노동자 등 민주화운동을 벌이다가 조직적 사건에 휘말려 장기형을 선고받은 경우이다. 세 유형의 장기수들은 각자 그 성격이 다르고 국민들의 인식도 다르다. 그러나 남파공작원들 조차도 남파즉시 체포된 사람들이 대부분인데다가 이미 그 죄값을 치렀다고 할 정도로 장기형을 복역한 상태여서 더 이상 구금의 필요성이 없어졌다. 둘째, 셋째의 경우는 심각한 고문이 개재되어 사건이 조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진실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경우가 많고 적법절차가 유린된 상태에서 지나치게 중형을 선고받았다. 비공개재판, 변호인없는 재판, 정보요원의 참석하에서의 재판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이들에게 선고되고 집행되고 있는 형량은 구체적 범죄사실에 비교하면 턱없이 높은 것이 사실이다²⁹⁾. 요즈음 국가보안법위반사건에 내려지는 형량에 비교하면 잘 알 수

29. 이를 역사적 또는 국제적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다.

1) 해방후 미군정하 및 한국전쟁 이전시기 : 재판없이 백색테러 또는 군사적 토벌작전과정에서 대량학살한 사례는 허다하지만 정식재판에 있어서는 사형, 무기징역형이 흔하지 않다.

2) 일제치하에서의 치안유지법사건 : 비밀결사·농조·적색노조사건에서도 1-2년에서 장기형이 4-5년 정도씩 선고되었다. 반일독서회사건등은 6개월에서 1년정도의 지극히 단기형이 선고되었다. 심지어 3.1독립선언사건때에도 2년전후가 선고되고 그 복역기간이 반도 되지 않았다.

3) 서독의 간첩사건 : 브란트수상의 보좌관이 동독을 위해 간첩한 사실로 구속되었는데 13년 선고, 7년복역후 동독으로 추방되었다. 브란트가 이 사건 때문에 사임하였고 NATO의 고급정보가 대량으로 동독과 소련으로 넘어간 사실이 확인되었다. 동독에서 파견한 간첩이 검거되면 3-4년징

있는 일이다. 또한 그 범행동기에 있어서도 양심수들이 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기 위해 또는 독재체제와 저항하는 과정에서 조직사건에 연루된 경우가 많았던 것이다. 또한 장기수들은 대체로 오랜 복역으로 연로함과 동시에 건강이 악화되어 있다. 이미 사회적 기반이 없어져 석방된다고 하여 어떠한 반국가적 활동에 종사하기 어렵다. 뿐만아니라 사회와의 오랜 격리와 그동안의 큰 사회적 변동으로 이들은 사회복귀와 단순한 생계확보조차 힘든 실정이어서 이들의 석방이 어떠한 사회질서 교란요소가 된다거나 국가위해적 요소가 생겨난다고 보기 어렵다.³⁰⁾ 그런데 이들에게 또다시 준법서약서를 강요하는 것은 이중의 폭력이며 비인도적 억압에 다름 아니다.

5. 결론

- 큰 길을 두고 '개구멍'을 통해 나올 수는 없다

전향제도이든 준법서약제도이든 그것은 인간내면의 자유에 대한 침탈행위이다. 인간의 내면세계까지 침탈하여 이를 규제하고 관리하려는 사고방식은 왕조시대와 독재시대의 유물이다. 냉전이 끝나고 이제 21세기를 바라보는 이 시점에서 아직도 그러한 유물이 다른 형태로 살아 남는다는 것은 참으로 불행한 일이다.

김대중 대통령은 자유가 들꽃처럼 피고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여러차례 언명해 왔다. 많은 인권정책이 공약으로 담겨졌으며 자신의 험난한 정치적 역정과 함께 평가받아 국제적 인권상까지 수상하였다. 김대통령이 수많은 세월을 인고끝에서도 그 한 장의 종이조각에 서명하는 일을 하지 않음으로써 석방되지 못한채 수십년의 세월을 살아온 장기수와 양심수들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이 정부의 인권정책은 더 이상 기대할 일이 없게 된다.

물론 많은 사람들은 김대통령과 박장관의 이번 준법서약서 방침이 전향제도를 폐지하고 많은 양심수들을 석방하기 위해 그에 반대하는 보수세력을 달래는 방편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정치적 동기와 충정이 담겨

역이 선고되고 동독에 추방되어 다시 당간부로 오른 사례들이 많다.

30. 실제로 석방된 장기수들의 경우 많은 종교단체, 인권단체들에 의해 생계를 보조받고 있는 실정이고 이들에 의한 재범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있다고 이해한다. 그러나 인권의 온전한 복원에는 절충이 있을 수 없다. 보수세력을 의식하여 과거정부의 잘못을 그대로 승계한 준법서약서를 강요한다면 그것은 양심수 자신은 말할 것도 없고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으로부터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민주주의와 인권은 타협이 있을 수 없다. 반민주주의인사들의 눈치를 보면서까지 민주주의 발전과 인권의 복원을 늦출 수는 없다. 어느 양심수가 지적한 것처럼 큰 길을 두고 구태여 개구멍을 통해 나오라는 요구를 아무도 받아들일 수 없다.